

2020년도

화도읍 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대상기관	감사기간(각 5일간)	감사대상범위(업무전반)
화도읍	2020.10.12.~10.16.	2018.10.1.~2020.8.31.까지

□ 감사결과 : 지적건수 42건

행정상	시정 주의	25건 17건	재정상	회수 5건 추급 2건 환급 4건 기타 3건	신분상

※ 재정상 조치 : 14건 / 00,000,000원

(회수 0,000,000원, 추급 0,000,000원, 환급 0,000,000원, 기타 00,000원)

감 사 관
(감 사 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0년 연간 감사 계획[감사관-557(2020.1.14.)호, 감사관-4325(2020.4.24.)]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통합·연계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하여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감사적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간소화 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본 감사 실시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감사기간 증가로 인한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대상기관 현안 파악 및 착안사항 발굴 등으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지향하게 되었다.

※ 행정복지센터 통합·연계 감사 실시

- 2020년 : 호평·평내동 통합감사 실시
- 2021년 : 진건읍·퇴계원읍, 별내동·별내면 통합감사 실시
- 2022년 이후 : 4개 행정복지센터 통합감사 실시(2년 주기)
 - *호평·평내동, 와부읍·조안면, 화도읍·수동면, 다산1,2동
- 2023년 이후 : 4개 행정복지센터 통합감사 실시(2년 주기)
 - *진접·오남읍, 진건읍·퇴계원읍, 금곡·양정동, 별내동·별내면

이에 따라 화도읍은 2018년 11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어 2018년 10월 이후 화도읍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업무 관련 법규 등 준수여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질서 준수 여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성과 위주의 감사, 수집된 감사정보, 내·외부 제보사항 등을 활용한 감사, 행정복지센터 위임(인·허가)사무·민원 처리 지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수당지급 적정여부,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자원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환경, 부동산, 산업, 농지, 건축, 도시 분야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 등 사후조치 적정 여부,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준수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감사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화도읍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부서 자체에서 대상 목록에 대하여 사전 체크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감사결과, 시 의회 논의사항 및 고충민원 발생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분석하였으며, 2020. 10. 12.부터 동년 10. 16.사이(총 5일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에 각 과장 및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확인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화도읍 현황(2020. 9. 30.기준)

□ 일반 현황

구 분	면적(km ²)	인구수			세대수	행정구역	
		계	남	여		리(통)수	반수
화도읍	71.46	115,377	57,868	57,509	47,000	95	773

□ 직원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직급별 현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101	98	1	4	16	19	21	37	1
생활자치과	31	31	1	1	4	6	8	11	0
복지지원과	27	25	0	1	4	4	5	12	0
도시건축과	22	22	0	1	4	4	5	8	0
산업환경과	21	20	0	1	4	5	3	6	1
(동부출장소)	(6)	(6)	(0)	(0)	(1)	(1)	(2)	(2)	(0)

2.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요약

(단위 : 건, 명, 원)

구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추급	환급	기타	계	징계	훈계
합계	42 (3)	25 (1)	17 (2)	-	14 (00,000,000)	5 (0,000,000)	2 (0,000,000)	4 (0,000,000)	3 (00,000)			

* () 현지조치 요구 건수

□ 부서 자가점검¹⁾ 결과

구분	자가점검 목록	점검결과(조치계획)		비고
1	통·리장 수당 지급 적정여부 확인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지급액 000,000원 환수 완료 과다지급액 00,000원, 00,000원 환수 예정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적정성 여부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점검으로 확인된 e호조 시스템에 미등록 자료가 존재하여 수납 미등록액 000,000원 등록 후 2019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중도 정산 환급액 000,000원 세입반환 조치 및 반납사유 불명확한 잔액 000원 확인 중. 	
3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 료 부과 적정여부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오납 부과조치 된 ○건 환급 조치 예정 미성년자 감경 미실시된 과오납금 환수 예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적정 여부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5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적정 처리 여부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재판정으로 등급 변경된 장애인 복지카드 반납 및 재발급 처리 진행 예정 사망 장애인의 유가족에게 장애인 복지카드 및 표지 반납 알림 및 회수처리 중 	
6	주택건설사업등록 확인 적정 여부	화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 총평

감사결과 총 4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하고,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3건은 감사기간 중 주의 등의 현지조치 요구하였다.

또한, 업무 부적정 및 소홀 등과 관련하여 건 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으며, 14건 00,000,000원의 회수 및 환급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1) 부서 자체에서 감사 실시 전, 자가점검 대상 목록에 대하여 감사관에서 제시한 점검 방법으로 사전 체크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감사 및 처분 제외)

화도읍은 2016. 1. 4. 행정복지센터로 개청(4개과 16개팀)되어 대민업무 및 안전, 복지, 문화·체육, 경제·산업, 환경, 산림개발·보호, 도시·건설 등의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인허가 업무 등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경험 부족과 사업 예산 재배정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담당직원들의 업무숙련도 부족 등으로 인한 유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도출되었다.

회계 및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담당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시 다수의 회계처리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회계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사운영비의 집행 및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등에 있어서는 업무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업무 매뉴얼화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 숙지 후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지속적 직무교육, 감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정·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처분계획

□ 처분요구내역 총괄

구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추급	환급	기타	계	징계	훈계
합계	42 (3)	25 (1)	17 (2)	-	14 (00,000,000)	5 (0,000,000)	2 (0,000,000)	4 (0,000,000)	3 (00,000)			

* () 현지조치 요구 건수

□ 처분요구목록(본 처분 39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치구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39건		총액 00,000,000원 회수 0,000,000원 추급 0,000,000원 환급 0,000,000원 기타 00,000원		
1	생활자치과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0원		
2	생활자치과	자율방범대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000,000원		
3	생활자치과 복지지원과 도시건축과 동부출장소	보안점검표 작성 및 관리 소홀	주의			
4	생활자치과	당직근무상황일지 작성 소홀	주의			
5	생활자치과 산업환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6	도시건축과	금량비 지출증빙자료 미비	주의			
7	생활자치과	민간행사보조사업(☆☆☆☆ ☆☆☆☆)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00,000원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8	동부출장소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세입처리 부 적정	주의			
9	생활자치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 적정	주의			
10	생활자치과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11	생활자치과 산업환경과	실시설계용역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주의			
12	산업환경과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일상감사 절 차 미이행	주의			
13	생활자치과 산업환경과	공사감독 업무 소홀	주의			
14	산업환경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부적 정	시정			
15	산업환경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주의			
16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 확인 소홀	시정			
17	복지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부 적정	시정	회수	000,000원	
18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소홀	시정	추급	000,000원	
19	복지지원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소홀	시정	추급	0,000,000원	
20	도시건축과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홀	시정			
21	도시건축과	공사감리자(상주감리) 배치 부적정	시정			
22	도시건축과	계단의 설치기준 확인 소홀	주의			
23	도시건축과	대지안에 공지 확보 부적정	시정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24	도시건축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대피공간 미설치	시정			
25	도시건축과	산지전용 복구비 산정 및 예치 소홀	시정			
26	도시건축과	산지불법 관리 소홀	시정			
27	도시건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시정			
28	도시건축과	세외수입 과오납금 미환급 처리 소홀	시정	환급 0,000,000원		
29	도시건축과	도로점용료 감액 부적정	시정			
30	산업환경과	농지취득자격증명(주말체험영농) 발급 부적정	주의			
31	산업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소홀	시정			
32	생활자치과	선금 및 용역대금(준공금) 지급 부적정(☆☆☆ ☆☆☆ 축제)	주의			
33	생활자치과	계약의 방법 및 면세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00원		
34	산업환경과	계약의 처리 절차 부적정(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의			
35	생활자치과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세입조치 누락 및 인증처리 부적정	시정	환급 0,000원 기타 00,000원		
36	생활자치과	인감 서면신고 업무처리 소홀	주의			
37	생활자치과 동부출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부적정	시정	환급 00,000원 기타 00,000원		
38	동부출장소	거주불명 직권조치 후 공고 미실시	시정			
39	생활자치과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세입조치 미흡	시정	환급 00,000원 기타 0,000원		

□ **처분요구 목록(현지처분 3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3건				
1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리 소홀	시정			
2	복지지원과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3	복지지원과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4.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행사보조사업(◇◇◇◇ ◇◇◇◇) 지도·감독 소홀	NO. 7
----------	-------------------------------------	--------------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년 및 ▽▽▽▽년 ◇◇◇◇ ◇◇◇◇ 보조금(민간행사보조)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 사용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년 ▯▯▯▯▯▯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정산보고서를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에 문서접수(등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에서는 ♣♣♣♣년 ◇◇◇◇ ◇◇◇◇ 보조금(0,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목적에 위한 직접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상에도 존재하지 않은 항목인 “◇◇◇◇(◎◎◎◎.◎.◎.) 종료 후 진행요원 및 임원 식대” 로 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 □.□.□. ▯▯▯▯▯▯가 제출한 【♣♣♣♣년도 제○회 ◇◇◇◇ ◇◇◇◇ 사

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보조금 적정집행여부 등) 심사하여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〇〇〇〇〇〇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집행한“ ◇◇◇◇ 종료 후 진행요원 및 임원 식대” 000,000원을 조속히 반환조치(회수)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NO. 9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시 신규공종 중에서 석면텍스철거 계약단가를 낙찰률 및 협의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견적단가(100%)를 그대로 적용하여, 약 000천원(낙찰률 적용 기준)을 과다하게 금액조정 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3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NO. 10
----------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년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실정보고(■●●●●.■.■.) 사항 중 본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동부출장소 원상복구 사항(☆☆☆☆)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추진하여 약 0,000천원을 증액 조정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하기 바라며,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본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설계변경 증액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NO. 15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주) 등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조치기

한 내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치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 확인 소홀	NO. 16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3편 조사 III.소득조사에 따르면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 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 ○○○(◇◇◇◇.◇.◇./000,000원) 등 ○○가구에 대하여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 등 ○○명의 사적이전소득 변동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에 따라 조치

6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NO. 17
---	-----------------------------	--------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하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관리하면서 1인 가구 사용대차자 등의 장기입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과 □□□에 대하여 각각 주거급여 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주거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주거급여 000,000원은 “회수”조치

7	공사감리자(상주감리) 배치 부적정	NO. 21
----------	---------------------------	---------------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화도읍 ■■■리 산□□-□□ 외 □□필지[2018-♣♣♣♣과-신축허가-000호(□□□□.□.□.)]상 건축물은 연면적 0,000.00㎡인 종교시설(교회)로 준다중이용건축물임에도 건축사보(상주감리) 배치 없이 공사완료 되었고, 화도읍 ■■■리 ◇◇◇-◇번지 외 ◇필지[2019-♣♣♣♣과-신축허가-000호(○○○○.○.○.)]상 건축물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은 제출되었으나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화도읍 ■■■리 △△△-△번지 외 △필지[2020-♣♣♣♣과-신축허가-00호(◎◎◎◎.◎.◎.)]상 건축물은 연면적 0,000.00㎡인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로 준다중이용건축물임에도 건축사보(상주감리) 배치 없이 공사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화도읍 ㉸㉸리 ◇◇◇-◇번지 외 ◇필지 상 공사현장에 건축사보 배치 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건축사협회에 통보(시정)

8	대지안에 공지 확보 부적정	NO. 23
----------	-----------------------	---------------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7조 별표3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3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화도읍 △△리 ○○○-○번지 외 ○○○필지(건축주: ☆☆☆☆주식회사) 건축허가 설계도서 상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709.5㎡인 창고시설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3미터 이상을 띄어 계획하여하나, 최소 1.7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별도 보완조치 없이 건축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화도읍 △△리 ○○○-○번지 외 ○○○필지 상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적법하도록 허가사항변경 조치(시정)

9	산지불법 관리 소홀	NO. 26
----------	-------------------	---------------

-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화도읍 ◎◎리 산◇◇-◇◇번지 상 임야 113㎡를 훼손하여 ㉸㉸㉸㉸. ㉸월경 적발 된 산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 원상복구 촉구명령 이후 현재까지 미조치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산지 내 불법 ○건에 대하여 산지 불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지 내 불법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시정)

10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NO. 27
----	--------------	--------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화도읍 □□리 ㉸㉸㉸-㉸번지 상 98.02㎡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 ○○○○.○.○.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 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건축물 총 ○○○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시정)

11	선금 및 용역대금(준공금) 지급 부적정	NO. 32
----	-----------------------	--------

• 선금보증서 징구 누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한다.)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약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위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주)☆☆☆☆☆☆☆☆와 “ㄱㄱㄱ ㄱㄱㄱ 축제 행사 ㄱㄱㄱ ㄱㄱ ㄱㄱ” (계약금액:00,000천원, 계약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액의 90%인 00,000천원 선금지급을 의뢰(생활자치과-00000호, ○○○○.○.○.)하여 ◎◎◎◎.◎.◎. 선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회계법 및 계약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90%의 선금(00,000천원)을 선금보증서 징구를 누락한 채로 지급 하였으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음에도 기 지급된 선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이미 수행된 부분을 검토하여 선금 정산 후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정산하지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 **용역 대금지급(준공금) 부적정**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방역 비상에 따라 『㉹㉹㉹ ㉹㉹㉹ 축제 취소 보고』(생활자치과-00000호, □□□□.□.□.)를 하면서 사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해당 용역의 선금 반납 가능여부 검토 계획을 세웠음에도 (주)☆☆☆☆☆☆☆☆의 계약 검토요지 답변서에 의해 선금 회수는 불가하며 2020년 ㉹㉹㉹ ㉹㉹㉹ 축제(행사명칭 변경 가능)에 한하여 출연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문서 접수 후 『2019년 ㉹㉹㉹ ㉹㉹㉹ 축제 취소에 따른 정산 계획 보고』(생활자치과-00000호, ◇◇◇◇.◇.◇.)에 어떠한 근거 자료 없이 정산지출 예정으로 0,000천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치 계획에 의해 기 지급된 선금에 대한 정산 검토와 해당 용역의 준공검사 없이 △△△△.△.△. 0,000천원을 추가 지급(준공금)하였다.

또한 계약 당시의 출연진과 추가금액 청구 당시의 출연진 명단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협의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고, 단가 산정도 변동되어 정산 지급 근거가 부적절함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0,000천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의 이월 등의 절차 없이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9년도 “㉹㉹㉹ ㉹㉹㉹ 축제 행사 ㉹㉹㉹ ㉹㉹ ㉹㉹” 계약 건을 2020년 행사 섭외 시 출연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연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금 지급 및 정산 업무에 철저

12	계약인 방법 및 면세사업자안의 계약체결 부적정	NO. 33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계약담당자 주의 사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
 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산업환경과에서 계약 의뢰한 “2019 ○○○○ ○○○○
 ○○ ○○○○(○차)” 및 “2020년 ◇◇◇◇◇ ◇◇◇◇◇(○차)” 에 대하여 계약집
 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공사 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한 공사 설계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면허 업체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용역으로 계약
 하여 해당 건설업 등록 면허가 없는 자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
 으며, 면세사업자인 사단법인 ㅂㅂㅂㅂ ㅂㅂㅂㅂ와 수의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은 “회수”(시정)

13	인감서면신고 업무처리 소홀	NO. 36
-----------	-----------------------	---------------

- 「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에 따르면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에 따르면 질병·출산·징집
 ·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
 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인감 서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의 서면 신고서 인감지 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누락하였고, ◇건의 신고는 보증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보증인의 인영을 인감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에도 서면신고서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누락한 바 있으며, □건의 서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 본인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고, ◆건의 서면신고 처리 시 대리인의 확인(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그대로 수리하는 등 인감 서면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인감증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 서면신고 업무 처리에 철저(주의)

5. 기타 지적 사항

감사결과 기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No.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도시건축과와 산업환경과에서는 사실상 공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 및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년 ㉸㉸○급 ◆◆◆ 등 ○명에게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000,000원은 “회수” 조치
2	자율방범대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No.2)
위법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 자율방범대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 자율방범대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

<p>내용</p>	<p>자율방법대는 ○○○○. 지방보조사업을 화도읍장의 승인 없이 중단하였음에도 화도읍에서는 사업포기서(○○○○.○.○.)를 제출받기 전까지 사업포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리 자율방법대의 활동지원금 000,000원과 발생이자를 반납 받지 못하고 있으며, ☒☒ 자율방법대는 야식비 결재 시에는 건별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지출결의서는 건1별로 작성하지 않고 월 1장의 지출결의서로 통합 작성하였고, ◇◇○리 자율방법대는 야식비를 선결재(7일분) 후 음식과 음료 등을 초소에 배달시키는 등 「○○○○년도 자율방법대 실비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고, ○○○○. 보조금 정산 시 ◇◇○리, ☒☒ 자율방법대는 순찰일지를 미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해병대, ▽▽○리 자율방법대는 순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급식실시사항(야식비) 및 차량운행내역 작성을 소홀히 하여 순찰일지가 정산검사 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개선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화도읍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정산 완료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p>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며, ○○리 자율방법대는 정산하시고, 사업포기 후 부적정하게 사용된 ◆◆리 자율방법대의 활동지원금 000,000원은 “회수” 조치
<p>3</p>	<p>보안점검표 작성 및 관리 소홀 (No.3)</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과, ▲▲▲▲과, ▼▼▼▼과, △△△△△에서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기재사항 및 결재를 누락하는 등 보안점검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화도읍 ▽▽▽▽과에서는 ○○○○년에 작성한 보안점검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실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점검표 작성 및 관리에 철저
<p>4</p>	<p>당직근무상황일지 작성 소홀 (No.4)</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주관부서 생활자치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총 ○○○일 (○○○◎년 ○▲월~▼월 중 ○○일, □□□□년 ○○○일, ▮▮▮▮년 ◇월~◆월 중 ○○○일)에 대하여 당직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근무상황일지 작성에 철저
<p>5</p>	<p>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No.5)</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대학팩스민원 수수료 세입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분과 현금결제분 착오계산에 따른 금액 0,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초과 입금 후 세입조치 등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산업환경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세입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카드결제분을 현금으로 착오 납부하여 발생한 000,000원과 현금수수료 과오납분 환급으로 인해 발생한 00,000원을 합한 금액 총 000,000원(현재는 000,000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등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카드결제액 수납)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조속히 세입 등 조치
<p>6</p>	<p>급량비 지출증빙자료 미비 (No.6)</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년 ○월(◇월분)부터 ▲▲▲▲년 ○월(◇월분)까지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에 거래처 □개소(▣▣▣ ▣▣▣)에 대해 거래장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만 첨부하여 보관(총○○건)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p>7</p>	<p>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 (No.8)</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출장소에서는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 절차를 거쳐 수납한 날의 다음날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인 ○○○○년 ◆◆월부터 현재까지 수납금의 납입을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p>8</p>	<p>실시설계용역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No.11)</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생활자치과 및 산업환경과에서는 ○개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초금액 작성 시 조사측량의 인부노임은 직접경비에 해당하나, 직접인건비로 반영하여 제경비 및 기술료의 계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대가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인부노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인부노임을 적용하여야 하나 건설공사 공종별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산정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대가의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p>9</p>	<p>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일상감사 절차 미이행 (No.12)</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점검·심사를 위한 일상감사 절차를 미 이행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p>10</p>	<p>공사감독 업무 소홀 (No.13)</p>
<p>위법 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생활자치과 및 산업환경과에서는 ○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정

내용	<p>보고에 대하여, 설계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 완료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또는 회신하지 않아 설계변경의 승인여부 및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진행한 사실</p>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계약예규(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
11	<p>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부적정 (No.14)</p>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주)★★★★ 등 ○건에 대하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면서 복구비용 예치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주)☆☆☆☆ 등 ○건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수허가자 ○인(㉸㉸㉸, ㉸㉸㉸)의 복구에 치금 납부여부 확인 및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지 ◇곳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확인 등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
12	<p>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소홀 (No.18)</p>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수급권자 책정일)부터 지급 개시해야 하는 ◎◎◎ 등 ○명에게 월동난방비 총 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과소 지급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000,000원은 “추급”
13	<p>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소홀 (No.19)</p>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가 지급개시 된 ㉸㉸㉸(□□□□.□.□. 책정) 등 ○○명에 대해 냉난방비 0,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미지급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0,000,000원은 “추급”

14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홀	(No.20)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허가 유효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상 증축허가 건 등 총◇◇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상 증축허가 건 등 총◇◇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 	
15	계단의 설치기준 확인 소홀	(No.22)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화도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은 설계도서 상 1층 층고가 6m로 높이 3미터 이내에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2미터에 계단참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보완 등 별도 조치 없이 허가처리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16	노인요양시설 등의 대피공간에 대한 사항	(No.24)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화도읍 ★★리 ☆☆☆-☆☆번지[2020-☐☐☐☐과-신축허가-00호(◇◇◇◇.◇.◇.)]상 노인요양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지상2층에 대피공간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화도읍 ♣♣리 ☼☼☼-☼번지 [2020-☐☐☐☐과-신축허가-000호(◆◆◆◆.◆.◆)]상 노인요양시설도 설계도서상 피난층이 아닌 지하1층에 대피공간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데도 보완 등 별도 조치 없이 허가처리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화도읍 ★★리 ☆☆☆-☆☆번지 및 화도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적법하도록 허가사항변경 등의 조치 	
17	산지전용 복구비 산정 및 예치 소홀	(No.25)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ㄷㄷ면 ㄱㄱ리 산☆ 외 ○필지 상 ★★★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가 00,000천원임에도 00,000천원을 부과하여 0,000천원을 과소 부과하는 등 총○○건에 대하여 복구비 산정을 잘못 산정 부하였고,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ㄷㄷ면 ㄴㄴ리 산★★-★번지 상 ▲▲▲ 건 등 총○건에 대하여 복구비를 재산정하지 않아 추가 복구비 00,000천원을 예치하지 않는 등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ㄷㄷ면 ㄴㄴ리 산★★-★번지 등 총○건에 대하여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예치
<p>18 세외수입 과오납금 미환급 처리 소홀 (No.28)</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이종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세외수입을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 0,000,000원에 대하여 환급하지 않은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이종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세외수입금 0,000,000원을 “환급” 조치
<p>19 도로점용료 감액 부적정 (No.29)</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도시건축과는 수동면 ㄴㄴ리 ◇◇◇번지 ◇호외 ◇필지 외 ○건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여야 할 점용료를 전액 감액하거나 도로구역 내의 필지에 대하여 폐도로 판단하여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액하는 등 도로점용료를 부적정하게 감액해준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감액한 도로점용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소 부과분을 추가징수
<p>20 농지취득자격증명(주말체험영농) 발급 부적정 (No.30)</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산업환경과는 주말체험영농 민원 접수 시 소유농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취득목적은 농업 경영으로 하여야 하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함으로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p>2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소홀 (No.31)</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적발사항을 통보하였고, 산업환경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면에서 통보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행위자 식별 불가 등의 사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p>22 계약의 처리 절차 부적정(수질개선 특별회계) (No.34)</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 집행하여야 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 예산을 해당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발송(◇◇◇◇.◇.◇.) 후 예산품의 집행 절차를 누락한 채로 생활자치과로 “☒☒○리 ☒☒☒☒☒☒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착공계를 접수하였으며 생활자치과에서는 해당공사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날을 계약일(◇◇◇◇.◇.◇.)로 하여 공사기간을 ◇◇◇◇.◇.◇. ~ ◆◆◆◆.◆.◆ 로 하여 감독공무원 임명 알림을 발송(◎◎◎◎.◎.◎.)함. • 따라서 계약의 예산집행 품의서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 문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의뢰 요청보다 계약일이 앞서게 되는 등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공사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23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세입조치 누락 및 인증처리 부적정 (No.35)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건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 수수료 총 0,000원을 과다 인증하고 ○○건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수수료 총 00,000원을 인증처리하지 아니하고 세입조치를 누락 • 화도읍 동부출장소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 당일 인증처리와 익일 세입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연(1~3일 씩 지연하여 인증처리) 및 부적정(인감변경신고 건이 없는 날에도 인증처리 하며, 해당날짜의 적정금액으로 인증처리하지 아니하는 등)하게 처리하여 수입증지 인증 및 세입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법」 및 「남양주시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부과한 0,000원은 “환급”하고, 수입증지 인증 및 세입조치 하지 않은 수수료 00,000원은 “부과”조치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부적정 (No.37)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신고 지연기간을 착오 계산하여 ☐☐☐에게 0,000원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 ☐☐☐ 등 ○명의 위반자에게는 총 00,000원의 과태료를 과소 부과 • 화도읍 동부출장소에서는 ☐☐☐☐ 등 ○명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총 00,000원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였으며 ☐☐☐☐에게는 0,000원의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부과한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 과태료 00,000원은 “환급”하고, 과소 부과한 과태료 00,000원은 “추징”조치
25	거주불명 직권조치 후 공고 미실시 (No.38)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동부출장소에서는 ★★★ 등 ○명에게 직권조치 후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 서면신고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직권조치사항의 통지·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에 대하여 통지·공고 절차를 이행

26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세입조치 미흡 (No.39)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재등록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에게는 00,000원의 과태료를 수납 후, 세외수입 시스템에 00,000원으로 잘못 세입처리 하였고 ☆☆☆에게는 일제정리기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00,000원을 과다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세입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 서면신고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부과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00,000원은 “환급”하고, 세입조치하지 못한 과태료 0,000원은 “부과”조치
27	건축물대장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리 소홀 (No.현지조치 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는 ◇◇◇◇.◇.◇. 부터 ◆◆◆◆.◆.◆까지 등기관서로 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총 0,000건(화도읍 0,000건 및 수동면 000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는 등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 0,000건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리
28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No.현지조치 2)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안내 및 의뢰·판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아래 현황과 같이 □□ 및 ▯▯▯에게 각각 만료일 00일, 00일 전에 안내함으로써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근로능력판정사업 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업무처리에 철저
29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No.현지조치 3)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도읍 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예정자에 대한 안내 업무를 처리 하면서 재진단 기한일 기준 3개월 전에 자료제출을 안내하여야 하며,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구서를 통지 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 등 ○명에게 이후에 안내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이 결정·반영되는 결과를 초래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업무처리에 철저